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12년도 제14차 회의

1. 일 자 2012년 7월 26일 (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임 승 태 위 원 (의장직무대행)

박 원 식 위 원 (부총재)

하성근 위원

정해방 위원

정 순 원 위 원

문 우 식 위 원

4. 결석위원 김 중 수 의 장 (총재)

 장 세 근 부총재보

김 준 일 부총재보

강 준 오 부총재보

강 태 수 부총재보

김 종 화 부총재보

추 흥 식 외자운용원장

최 운 규 경제연구원장

신 운 조사국장

성 병 희 거시건전성분석국장

김 민 호 통화정책국장

유 상 대 국제국장

이 중 식 금융결제국장

김 윤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이 명 종 공보실장

서 영 경 금융시장부장

성 상 경 의사관리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28호 —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선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현행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의 유효기간이 2012.7.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을 새로 선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 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금융기관들이 당행의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어떤 이득을 얻게 되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정확히 계량화하기는 힘들지만 해당 금융기관의 시장 평판이 제고되는 긍정적인 효과 등이 있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들이 대상기관 선정 신청시 유동 성 조절수단별로 차이를 보이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은행은 지준관리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단기 자금 관리에 유리한 RP대상기관에 선정되기를 원하며, 금융투자회사들은 채권중 개를 통한 수익창출을 위하여 통안증권 대상기관에 선정되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현재 1년인 대상기관 선정주기를 보다 연장할 필요 는 없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대상기관 선정주기가 1년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는 데다, 선정주기가 장기화되면 금융기관들의 관심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답변하였음

한편, 일중RP매매 대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위원들은 차기 대상기관 선정시 결제 조기화에 기여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시 그 기여도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경영상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한편, 일중RP매매 대상기관의 정책협조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피력하였음

일부 위원은 당행이 규정 등에서 '공개시장조작'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조작'이라는 용어는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전문용어이지만 지금 시대에 적합하지 않고 한글전용에도 어울리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으므로, 동 용어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다른 일부 위원은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이 은행과 증권사 위주로 되어 있다고 지적한 후, 보험회사나 여타 기관투자가 등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 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보험회사 등 여타 기관도 공개시장조작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금융기관과 일일이 거래를 하기 어려우며, 또 금융기관들은 발행시장 외에 유통시장을 이용하여 거래를 할 수도 있으므로 은행 금융투자회사 등 거래규모가 큰 주요기관으로 거래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유동성 조절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보다 용이한 측면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다만, 2008년 10월말과 같이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상기관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첨언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동 위원은 공개시장이라는 의미는 모든 금융기관들이 동 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의미하므로, 가급적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을 붙임과 같이 선정한다.

<붙임>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선정(안)(생략)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화정책-금융통화위원회-의결사항' 참조)